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30

발의연월일: 2022. 9. 2.

발 의 자 : 박상혁ㆍ이동주ㆍ김윤덕

정성호 • 이해식 • 김주영

홍성국 • 어기구 • 이정문

홍기원 · 최인호 · 유기홍

민형배 · 조오섭 · 이학영

김정호 · 한준호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하여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를 규정하고 이를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등록을 수리하고 있음.

그런데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차 또는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되지 않거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시급한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침수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에 해당하는"을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5.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	
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u>.</u>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	
에 따른 종합검사를, <u>제4호에</u>	<u>제</u> 4호 또는 제 <u>5</u>
<u>해당하는</u> 경우에는 제43조제1	호에 해당하는
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	
각 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렁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u> 자동차</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